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검찰의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2명(연구사 2명)을,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인력 10명(5급 3명, 6급 6명, 7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수사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명(7급 1명)을,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인력 5명(6급 3명, 7급 2명)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,

대검찰청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영상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(연구사 1명)을 증원하고, 지방검찰청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(7급 1명, 8급 4명) 및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(6급 1명, 7급 5명)을 각각 증원하며, 대검찰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1명(검찰사무관 1명)을 복수직렬 정원(검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)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. ~ 2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중 “4명(검찰사무관 4명)”을 “3명(검찰사무관 3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405명”을 “40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534”를 “53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34”를 “538”로 하며, 검찰수사서기관 3 다음에 “과학기술서기관 1”을 신설하고, “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1”을 삭제하며, 검찰사무관 “51”을 “50”으로 하고, 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 다음에 “검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”을 신설하며, 검찰주사보 “88”을 “89”로, 공업연구사·보건연구사·환경연구사·심리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“30”을 “33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7,856”을 “7,88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,856”을 “7,882”로 하며, 마약수사사무관 “21”을 “24”로, 검찰주사 “1,365”를 “1,369”로, 마약수사주사 “67”을 “73”으로, 검찰주사보 “1,773”을 “1,781”로, 마약수사주사보 “85”를 “86”으로, 검찰서기 “1,019”를 “1,02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공무원의 정원) ① ~ ③ (생 략)	제2조(공무원의 정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대 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 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 하는 1명(검찰수사서기관·검 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),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 (검찰주사보 1명)과 그 밖의 정 원 중 <u>4명(검찰사무관 4명)</u>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으며,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(검찰사무관 1명, 검찰주사 1명) 및 공무원직 근로 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 (검찰주사 1명)은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명(검찰사무관 3명)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 서기관·검찰사무관 또는 마약 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 찰사무관 <u>405명</u> 중 79명은 「검 찰청법」 제32조에 따라 지방검 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	⑥ ----- ----- ----- ----- <u>403명</u> ----- ----- -----

의 정원으로 본다.

⑦ · ⑧ (생 략)

-----.
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(제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534</u>	<u>538</u>	+4
일반직 계	<u>534</u>	<u>538</u>	+4
·	·	·	
·	·	·	
검찰수사서기관	3		
<u>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</u>			
<u>기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검찰사무관	<u>51</u>	<u>50</u>	-1
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			
무관	1		
<u>검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·	·	·	
·	·	·	
검찰주사보	<u>88</u>	<u>89</u>	+1
·	·	·	

· 공업연구사 · 보건연구사 · 환경연구사 · 심리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· ·	· <u>30</u> · ·	· <u>33</u> · ·	+3
--	---	---	-----------

[별표 2]

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(지청 포함) 공무원 정원표
(제2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,856</u>	<u>7,882</u>	+26
일반직 계	<u>7,856</u>	<u>7,882</u>	+26
·	·	·	
·	·	·	
마약수사사무관	<u>21</u>	<u>24</u>	+3
·	·	·	
·	·	·	
검찰주사	<u>1,365</u>	<u>1,369</u>	+4
·	·	·	
마약수사주사	<u>67</u>	<u>73</u>	+6
·	·	·	
·	·	·	
검찰주사보	<u>1,773</u>	<u>1,781</u>	+8
·	·	·	
마약수사주사보	<u>85</u>	<u>86</u>	+1
·	·	·	
·	·	·	
검찰서기	<u>1,019</u>	<u>1,023</u>	+4

	.	.	.	
	.	.	.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4